

입양 관련 일반 정보

입양을 시작하기 전에 귀 가정의 선택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며, 일부 가정은 입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센터의 입양 페이지(www.courts.ca.gov/selfhelp-adoption.htm)에서 제공되며, 아울러 입양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거나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 양식은 관할 법원 서기실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종류의 입양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다음 유형의 입양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양부모/동거인 입양
- 양부모/동거인의 부모 관계 확정
- 미국 내 독립 입양 또는 기관을 통한 입양
- 해외 입양

또한 4페이지에는 인디언(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입양을 위한 공개 입양 및 특별 요건 정보가 있습니다.

양부모/동거인 입양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양부모 입양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 입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절차를 찾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 **귀하는 해당 아동의 출생 시점에 아동의 법적 부모와 결합 상태였으며 여전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결합 상태”는 결혼,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동거 상태 또는 타주에 등록된 법적으로 결혼에 상응하는 동거 또는 동성 결혼을 의미합니다.)
- ➔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자녀를 출산했거나 둘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참여한 대리모 임신을 통해 출생했습니까?**

두 질문 중 하나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양부모 /동거인 입양을 위해 아래 항목 1-4를 작성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경우, 부모 관계 확정을 위해 다음 양부모 입양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1 법원 양식 작성하기

<input type="checkbox"/> ADOPT-200	입양 신청서	귀하와 귀하가 입양하려는 아동에 관해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input type="checkbox"/> ADOPT-210	입양 동의서	귀하와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 동의 사실을 판사에게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서명은 판사가 서명을 요청한 후에 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ADOPT-215	입양 명령서	판사가 입양을 승인하면 본 양식에 서명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CWA-010(A)	인디언 아동에 대한 조사 첨부 문서	귀하가 필수 질문을 통해 해당 아동이 인디언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input type="checkbox"/> ICWA-020	부모에 대한 인디언 신분 통지서	본 양식은 친부모 두 사람이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의 잠재적 인디언 신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양부모 입양용 부모 관계 확정 추가 양식

<input type="checkbox"/> ADOPT-205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고서)	양부모 입양용 부모 관계 확정 신고서	귀하가 자녀를 어떻게 임신했는지와 다른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본 양식은 양부모 입양을 통해 부모 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본 유형의 입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친부모와 양부모가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input type="checkbox"/> ADOPT-206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고서)	양부모 입양용 부모 관계 확정 신고서: 대리모 출생	귀하가 자녀를 어떻게 임신했는지와 다른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해당 아동이 대리모 임신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동이 태어난 주에서 아동의 출생증명서에 법적 부모로서 부모가 되려는 사람 중 한 명의 이름만 올리도록 허용함에 따라 양부모 입양을 통해 부모 관계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만 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2 법원에 양식 제출하기

작성한 양식을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 법원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변호사 또는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양식을 전달하십시오.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 앞에서 ADOPT-210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양부모 입양에서 부모 관계를 확정하려는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명령하지 않는 한 가정 방문 조사나 심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양식 제출 시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 앞에서 ADOPT-210 양식에 서명하면 판사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준비되고 귀하가 요건을 충족하면, 판사가 입양 명령서에 서명함으로써 입양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원이 조사 또는 심리를 명령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3 사회복지사가 보고서 작성

대부분의 입양에서 사회복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입양 부모와 아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귀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귀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서기에게 입양 심리 기일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 해당 날짜에 심리에 출석하십시오

동반인 또는 지참물: 입양하려는 아동 양식 ADOPT-210 양식 ADOPT-215
 (판사와 함께 귀하와 아동의 사진 촬영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 (선택 사항) 친구/친척(선택 사항)

미국 내 독립 입양 또는 기관을 통한 입양

미국 내 독립 입양 또는 기관을 통한 입양인 경우 아래 항목 1-4를 작성하십시오.

참고: 기존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입양과 동시에 상실됩니다. 독립 입양에서는 기존 부모와 입양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기존 부모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8617(b)조를 참조하십시오.

1 법원 양식 작성하기

- | | | |
|---------------------------------------|---------------------|---|
| <input type="checkbox"/> ADOPT-200 | 입양 신청서 | 귀하와 귀하가 입양하려는 아동에 관해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
| <input type="checkbox"/> ADOPT-210 | 입양 동의서 | 귀하와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 동의 사실을 판사에게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서명은 판사가 서명을 요청한 후에 하십시오. |
| <input type="checkbox"/> ADOPT-215 | 입양 명령서 | 판사가 입양을 승인하면 본 양식에 서명합니다. |
| <input type="checkbox"/> ADOPT-230 | 입양 비용 | 입양 아동과 관련하여 귀하가 부담한 내역을 판사에게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
| <input type="checkbox"/> ICWA-010(A)* | 인디언 아동에 대한 조사 첨부 문서 | 필수 질문을 통해 해당 아동이 인디언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
| <input type="checkbox"/> ICWA-020* | 부모에 대한 인디언 신분 통지서 | 본 양식은 친부모 두 사람이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의 잠재적 인디언 신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입양 파일에 추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법원에 양식 제출하기

작성한 양식을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 법원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변호사 또는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양식을 전달하십시오.

3 사회복지사가 보고서 작성

대부분의 입양에서 사회복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입양 부모와 아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귀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귀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서기에게 입양 심리 기일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 해당 날짜에 심리에 출석하십시오

동반인 또는 지참물: 입양하려는 아동 양식 ADOPT-210 양식 ADOPT-215 양식 ADOPT-230
 (판사와 함께 귀하와 아동의 사진 촬영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 (선택 사항) 친구/친척 (선택 사항)

해외 입양

해외(국가 간) 입양인 경우 아래 항목 1-6을 작성하십시오.

참고: 해당 입양 절차가 이미 해외에서 확정되었다도 입양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 절차가 해외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아동이 미국에 입국한지 60일 후 또는 아동의 16세 생일 중 더 빠른 날짜 이전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원 양식 작성하기

- ADOPT-200 입양 신청서 귀하와 귀하가 입양하려는 아동에 관해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 ADOPT-210 입양 동의서 귀하와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 동의 사실을 판사에게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서명은 판사가 서명을 요청한 후에 하십시오.
- ADOPT-215 입양 명령서 판사가 입양을 승인하면 본 양식에 서명합니다.
- ADOPT-230 입양 비용 입양 아동과 관련하여 귀하가 부담한 내역을 판사에게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 ICWA-010(A) 인디언 아동에 대한 조사 첨부 문서 귀하가 필수 질문을 통해 해당 아동이 인디언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양식입니다.
- ICWA-020 부모에 대한 인디언 신분 통지서 본 양식은 친부모 두 사람이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의 잠재적 인디언 신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2 입양 후 또는 위탁 후 방문 및 보고

입양이 해외에서 확정된 경우, 입양 후 1회 이상 국제 입양 기관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다음 설명에 따라 법원에 방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캘리포니아 입양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가정에 위탁된 경우, 입양 기관은 최대 4회의 방문을 통해 사후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공됩니다.

3 문서 첨부

해외에서 입양이 확정된 경우, 입양 신청서에 다음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의 입양 확정 사실을 반영하는 외국 법령, 입양 명령서 또는 입양 증명서의 공인 또는 기타 공식 사본
- 해당 아동의 해외 출생증명서 공인 또는 기타 공식 사본
-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필수 문서의 공인 번역본
- 양부모의 직계 친척으로서 해당 아동의 합법적 미국 입국 승인에 대한 증거
-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해외 입양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계약자가 위탁 후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
- 가족법 제8900조에 따라 해외 입양 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입양 기관이 해외에서 확정된 입양에 관해 사전 작성한 가정 조사서 사본

4 법원에 양식 제출하기

작성한 양식과 필요한 문서를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 법원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변호사 또는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양식을 전달하십시오.

5 양식 및 문서 사본 제공

해외에서 입양이 확정된 경우, 귀하에게 국가 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한 입양 기관에 귀하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6 해당 날짜에 심리에 출석하십시오

- 동반인 또는 지참물: 입양하려는 아동 양식 ADOPT-210 양식 ADOPT-215 양식 ADOPT-230
 (판사와 함께 귀하와 아동의 사진 촬영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 (선택 사항) 친구/친척 (선택 사항)

인디언 아동 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에 따른 조사 및 통지

- 아동이 인디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 및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기타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 신청서에 **인디언 아동에 대한 조사 첨부 문서(양식 ICWA-010 (A))**를 첨부합니다. 기관을 통한 입양에서 해당 기관은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 입양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입양 서비스 제공 업체, CDSS 지역 사무소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있습니다. 조사 의무 관련 세부 사항은 [ICWA-005-INFO](#)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친부모 각자에 대해 작성한 **부모에 대한 인디언 신분 통지서(양식 ICWA-020)**를 입양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친부, 친모, 인디언 후견인 또는 아동 보호자에게 양식을 제공한 뒤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을 통한 입양에서 해당 기관은 본 양식이 친부모에게 제공되었으며 입양 파일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 입양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입양 서비스 제공 업체, CDSS 지역 사무소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있습니다.
- 아동이 인디언이거나 인디언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의무 관련 세부 사항은 [ICWA-005-INFO](#)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법적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해당 아동이 인디언임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인디언 아동을 위한 아동 보호 진행 통지서(양식 ICWA-030)**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의 부족, 부모, 인디언 후견인 및 인디언 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에 입양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본 양식은 회신이 요구되는 등기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송달해야 합니다.
- 해당 아동이 인디언이거나 부족의 관습에 따른 입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인디언 아동 입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인디언 아동의 입양

인디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다음 추가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인디언 아동의 입양(양식 ADOPT-220)**
- 친권 상실에 대한 인디언 아동의 부모의 동의서(양식 ADOPT-225)**

부족의 관습에 따른 입양인 경우, 신청서(양식 ADOPT-200) 및 명령서(양식 ADOPT-215)에 첨부해야 부족 관습에 의한 입양 명령서 사본을 합니다.

‘개방형’ 입양

해당 아동이 원가족과 접촉하기를 희망할 경우, 입양 자녀의 가능한 원가족 접촉 유형을 명시하여 입양 후 접촉 동의서(양식 [ADOPT-310](#))를 작성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을 심리에 지참하십시오.